

# 수출입 사전포장식품 라벨 검사 감독관리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

## (해관총서 공고 2019년 제70호)

국무원의 광관푸(放管服: 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 개혁 심화 요구를 관철하고, 통관 효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 검사법」 및 그 실시조례 등 법률, 법규 규정에 의거하여 수출입 사전포장식품 라벨검사 감독관리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2019년 10월 1일부터 최초 수입되는 사전포장식품의 라벨 등록(備案) 요구사항을 폐지함. 수입 사전포장식품 라벨은 식품검사항목 중 하나로서, 해관이 식품안전 및 수출입상품 검사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검사함
2. 수입업체는 수입 사전포장식품의 중문 라벨이 중국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 식품안전국가표준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책임지고 심사해야 함. 심사에 불합격한 경우 수입할 수 없음
3. 수입 사전포장식품이 현장검사 또는 실험실검사를 받는 경우, 수입업체는 해관 직원에게 합격증명자료, 수입 사전포장식품 라벨 원본 및 번역본, 중문라벨 샘플 및 기타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4. 해관은 수입 사전포장식품 라벨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관련 당국의 통보, 소비자 신고를 받은 경우, 반드시 조사 확인하고, 사실로 확인된 경우 법에 의거하여 처리해야 함
5. 전시, 샘플, 면세경영(내국인 면세 제외), 공관의 자체사용, 관광객 휴대, 우편, 택배, 국제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들어온 사전포장식품의 라벨 감독관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함
6. 수출 사전포장식품 생산기업은 수출하는 사전포장식품 라벨이 수입국(지역)의 표준 또는 계약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함
7. 「수출입식품, 화장품 라벨 심사제도 조정에 관한 공고(질검총국 2006년 제44호 공고)」, 「수입 사전포장식품 라벨 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공고(질검총국 2011년 제59호 공고)」, 「수출입 사전포장식품 라벨 검사 감독관리 규정 시행에 관한 공고(질검총국 2012년 제27호 공고)」는 2019년 10월 1일부터 폐지되며, 이전에 이미 등록된 수입 사전포장식품 라벨 정보는 이와 동시에 폐기됨